



환경법 위·반·사·례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조업하여야 함.

- (주)00제조업체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도금시설(3.4m³×5기)등을 가동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채수하여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크롬이 5.34mg/l (배출허용기준 2mg/l), 아연이 4.92mg/l (배출허용기준 5mg/l), 총질소(T-N)가 125.8mg/l (배출허용기준 60mg/l)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함

사례 1

-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
-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 조치사항
 -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00제조업체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용해시설(1.0m³×2기)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250m³/분×1기)에 대하여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먼지항목이 103.4mg/sm³으로써 배출허용기준(70mg/sm³)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등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조업하여야 함.

사례 3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 (일반폐기물 혼합 보관)
-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조치사항 (벌칙 또는 행정처분 기준)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조치명령)
- 위반사례
 -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인 (주)00업소는 누구든지 발생된 폐기물을 보관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구분 보관 하여야 함에도 '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

사례 2

-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
-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 조치사항
 -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 위반사례

물과 혼합·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4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 (지정폐기물물의 옥외보관)
-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조치사항 (벌칙 또는 행정처분 기준)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조치명령)
- 위반사례
 - 00(주)업소는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소(생산물 : 실린더)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생산공정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폐유 약 2.2톤(13드럼)을 적정한 보관시설이 아닌 철제 드럼으로 포장한 후 사업장 부지내 옥외 주차장 일부 지역에 임의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

- (주)00업소는 유독물제조(트리클로로에틸렌)업소로서 유독물영업자는 그 유독물의 명칭·수량 등 유독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나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유독물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함

유독물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보존

유독물영업자등은 유독물을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그 유독물의 명칭·수량 등 유독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사례 5

- 위반내용 : 유독물관리대장 미기록
- 관 련 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 조치사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처분 :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 위반사례